VERTIUM

첨단2지구 A8블럭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1월 10일 견본주택오픈

HO BAN 호반건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십시오.

※ 본 주택은 간편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자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i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30~16:30 → 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30~18:00 → 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자가 이 규칙 시행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인정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2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청후 주택의 및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당첨일로부터 5년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11호) 제6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이 규칙 시행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인정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2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청후 주택의 및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서아버모델하우스(www.chumdan-hoban.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시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서아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주택의 분양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 9433호 (2012. 01. 0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내 A8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5~20층 12개동 총 7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보육시설)[보육시설 47.12㎡ 중 아파트 지분 43.355㎡, 상가 지분 3.765㎡]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총 733세대 중 특별공급 203세대 포함[분양 특별공급 7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3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1세대 포함]

(단위 : 면적=㎡, 금액=원)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단지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 지분	층별 공급세우수	공급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 금 (입주 시점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시	2012.03.05	2012.06.11	2012.08.31	2012.10.31	2012.12.31	2013.04.15	2013.07.31	2013.10.31
민영주택	2012000022-01	84.9419 (A)	84.9419	28.7560	113.6979	39,6020 (35,4343)	153.2999	59.1036	49,983,000	163,517,000	197,700,000	9,900,000	9,9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59,700,000
									44,983,000	157,917,000	202,100,000	10,200,000	1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60,500,000
									44,983,000	162,317,000	206,500,000	10,400,000	10,4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62,100,000
									44,983,000	166,717,000	210,900,000	10,600,000	10,6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63,700,000
									44,983,000	175,517,000	219,700,000	11,000,000	11,0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66,300,000
									44,983,000	179,917,000	224,100,000	11,200,000	11,2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67,600,000
									44,870,000	184,130,000	229,000,000	11,500,000	11,5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69,500,000
									44,870,000	189,530,000	234,400,000	11,700,000	11,7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71,100,000
									44,870,000	194,130,000	239,000,000	12,000,000	12,0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72,500,000
									44,870,000	198,530,000	243,400,000	12,200,000	12,2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74,000,000
		84.9460 (B)	84.9460	30.4817	115.4657	39,6217 (35,4516)	155.0874	59.1629	49,983,000	163,517,000	197,700,000	9,900,000	9,9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19,700,000	59,700,000
									44,983,000	157,917,000	202,100,000	10,200,000	1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60,500,000
									44,983,000	162,317,000	206,500,000	10,400,000	10,4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62,100,000
									44,983,000	166,717,000	210,900,000	10,600,000	10,6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63,700,000
									44,983,000	175,517,000	219,700,000	11,000,000	11,0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66,300,000
									44,983,000	179,917,000	224,100,000	11,200,000	11,2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67,600,000
									44,870,000	184,130,000	229,000,000	11,500,000	11,5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69,500,000
									44,870,000	189,530,000	234,400,000	11,700,000	11,7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71,100,000
									44,870,000	194,130,000	239,000,000	12,000,000	12,0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72,500,000
									44,870,000	198,530,000	243,400,000	12,200,000	12,2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74,00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령 최고 분양가격 범위안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2층 등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2층의 최저층을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제외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입주자격이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3에 도달하였을 때에 제3의 도약이 부담 없이 대출기관, 등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라야 등별 중도금 2회에 이르러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서 발행일이 납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건축공정 확인서 발행일에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서 발행일이 납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건축공정 확인서 발행일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금 대출은 당사가 알선하지 않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등록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비만 별도로 추후 부과되는 과태금액을 입주자 전원 납부시 징수할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전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체가 정부에 대한주택보증(주)의 「대한주택보증(주)의 지정에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지정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공휴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대한 사정거리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면적표기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소득기준

구 분	20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4,007,679 원 이하	4,447,007 원 이하	4,709,765 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809,205 원 이하	5,336,408 원 이하	5,651,718원 이하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년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은 제외)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주택수에 대하여 제외함

다) 가구당소득 월평균액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소득종합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종합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은 제외함

라)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2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2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신청세대 공통사항[분양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구 분	일 시	장 소
특별공급 신청	2012. 01. 16(월) 09 : 00~15 : 00)	당시 견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2. 01. 16(월) 17 : 00)	

※단,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세류실시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공고안우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를 위하여 별도 배정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기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10조 제1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한 납부자로 2회 이상 지역별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신청장소는 당첨자 발표일기 등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오니 1인당 1세대만 신청할 것(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 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또는 당첨자 지정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9.4.1~ 2012.3.31까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단, 부적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에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청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ㅁ)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순 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근로자	공 통	가점제 (7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분양자의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을 만 60세 이전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추첨제 (25%)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사실 요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와 분리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주택에 대하여 감점 적용
		전 주택형		• 청약통장 가입은 청약신청 접수일 기준 최소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최저 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최저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로서 청약통장 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최저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로서 청약통장 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
				※ 납입 횟수에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최저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
				• 위 각 주택형에 신청하는 경우에 납입인정금액이 최저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
				• 납입인정금액이 최저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
				• 위 각 주택형에 신청하는 경우에 납입인정금액이 최저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
	1순위	가점제/추첨제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분양자
		전 주택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인 분양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인 분양자로서 청약통장 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
				※ 납입 횟수에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최저예치금액 이상인 분양자
	2순위	가점제/추첨제		• 1순위 청약자 중 청약통장 가입일이 빠른 자
		전 주택형		• 1순위 청약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3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 및 2순위 청약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는 먼저 배우자의 세대원이 분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에게 이전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신청함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가점제 계산기준일에 청, 청약 통장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판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제1항 관련)

구 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비 고
배우자	2식이하	4,000만원	광주광역시 기준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8호, 1999.2.10"에 의해서 기존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분에 한하여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함.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광주광역시	2012.01.17(화)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i2you.com) * 접수시간 – 인터넷 : 08:00~17:30	* 일시 : 2012.01.26(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ww.chumdan-hoban.co.kr) – 2012.01.26일자 호실소문게재
	2순위	광주광역시	2012.01.17(화)		
	3순위	광주광역시	2012.01.18(수)	* 접수장소 : 인터넷08:00~17:30) – 금융결제원 : www.api2you.com – 단, 국민은행 거래고객 (오직 청약신청을 출금계좌로 : www.kbstar.com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적모 기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종이려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개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서류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청약은행 전국 가능함)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2) 청약관련 예금 변경조생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청약통장은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별청약통장 가입기간별 납입약인 경우 해당 주택규모별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청약저축은 가입기간 1순위인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납입가능한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자)속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킨다
  – 청약예금 가입자중 청약통장 전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환일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한 1순위인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처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이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일반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 충별·동별·호별·함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자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3순위의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3. 1·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세대별(세대원) 불가해,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25%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4.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격
  – 가주거지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본인 책임으로 청약을 취소 할 수 없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시 제출할 청약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하여 청약신청서 작성 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음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